

“금융은 믿음가득, 국민은 희망가득 -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”



보도자료

2011. 9. 15. (목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소비자보호감독국 민원상담팀		
책임자	김치봉 팀장(3145-8520)	담당자	김찬훈 수석(3145-8706)
배포일	2011. 9. 15. (수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6~92) 총 5매

제목 : “상속 금융자산 찾아가세요”

1 배경

- 사망자들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일반국민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(채권 및 채무)을 찾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
 -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회사들이 '98.8월부터 제공하는 무상의 서비스로서 매년 일반국민들의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
- 그간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액(약 5천억원)의 상속재산이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의 동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와 같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조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

2 이용현황 및 문제점

- (이용현황) '11년 상반기중 서비스 이용실적은 24,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.9%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s.or.kr>

최근 5년간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실적

(단위 : 건, %)

구 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.1~6월
건 수	21,624	28,015	31,856	39,801	44,825	24,490
전년동기비 증감률	34.1	29.6	13.7	24.9	12.6	14.9

□ (문제점) '10년의 경우 사망자 255,403명(통계청 자료)중 17.6%에 대하여만 동 조회서비스를 이용

- 이에 따라 5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자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남아 있음

※ 2000.1.1~2010.12.31 기간중 신고된 사망자 270만명의 은행 및 증권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1.3월말 현재 인출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4,983억원(관련 사망자 164천명)으로 파악

사망자 명의 미인출 금융자산 현황('11.3.31 현재)

(단위 : 명, 개, 억원)

구분	회사수	사망자명의 고객수	사망자명의 계좌수	미인출 금융자산			1인당잔고 (백만원)	
				예(탁)금	수익증권등	유가증권		
은행	18	135,204	190,805	3,133	2,790	343	0	2.3
증권	32	28,990	45,038	1,850	184	450	1,216	6.4
계	50	164,194	235,843	4,983	2,974	793	1,216	3.0

주) '00.1.1 ~ '10.12.31 기간중 사망신고자 기준

□ 또한,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사망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」* 등 법적 제한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관련 정보제공이 불가능

* 제7조 2항에는 “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”하도록 규정

- 정당한 상속인의 인출이 없을 경우 사망자 금융자산은 일정기간 (5년) 경과 후 휴면계좌로 존치

3 「상속 금융자산 찾아가세요」 캠페인 실시 방안

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대국민 홍보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

① 사망신고시 행정기관에서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안내

- 시, 구, 읍, 면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망신고 처리시 담당 공무원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

② 지자체 발간 주민홍보물을 통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홍보

- 자체 소식지 및 반상회 홍보물 등 지자체 발간 간행물에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등 소개

③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캠페인 전개

-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상속인 조회서비스 안내 배너(금감원 제공) 설치 및 고객게시판에 공지

④ 금융거래 조회결과 통보대상 금융거래 확대

- 상속인 조회결과 통보시 사망자 명의 모든 채권 및 채무잔액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통보토록 지도

* 현재 조회대상 정보는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로 한정

끝.

(참고 1)
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

1. **조회대상자** : 피상속인(사망자, 실종자 및 금치산자)

2. **조회 범위** :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

3. 이용절차

신청자 : 상속인 또는 대리인

신청기관 :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,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,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, 삼성생명 고객플라자,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 신청

※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,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,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32)으로 문의

4. 구비서류

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: 제적등본, 상속인 신분증

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

- 사망자의 사망사실(사망일자포함)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
-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 제적등본)
- 상속인 신분증

실종자 금치산자 :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, 법원판결문(원본)
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-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
-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상속인 인감도장 날인)
- 대리인 신분증

5. 결과확인

신청후 약5~15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, 금융감독원 (www.fss.or.kr)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

(참고 2)
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흐름도

